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계」 제 폐지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과로 공기업특별회계 부서가 이원화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조례개정

나. 주요골자

○ 상하수관련 공기업특별회계 부서 통·폐합

• 상수도사업소 + 하수과 → 상하수도사업소

○ 기구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 재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기구명칭 변경 사항으로 반대의견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계」 제 폐지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과로 공기업특별회계 부서가 이원화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조례개정

주요골자

- 상하수관련 공기업특별회계 부서 통·폐합
 - 상수도사업소 + 하수과 → 상하수도사업소
- 기구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 재조정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확충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상수원관리 및 원수개발
3. 상하수도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의 부과·징수
4.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